

- '지방경찰청장'에서 '시·도경찰청장'으로 변경

- '국가경찰공무원'에서 '경찰공무원'으로 변경

나. 「경찰공무원법」 인용 조문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

- 일반우편: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 (우편번호 : 03739)

- 전자우편: woodywith@police.go.kr

- 팩스: 02-3150-2803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(www.police.go.kr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,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(전화 02-3150-0663, 팩스 02-3150-280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● 소방청공고제2020-193호

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4일

소방청장

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 높이 및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을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.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,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4조제1항제6호)

3. 의견 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wj0117@korea.kr

2)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(우)30127

3) 팩스 : 044-715-7621

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: 044-205-75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및 소방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fa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●문화재청공고제2020-349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(보물)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. 12. 24.

문 화 재 청 장

1. 공 고 명 : 「세종 비암사 극락보전」 보물 지정 예고

2. 국가지정문화재(보물) 지정내용

○ 종 별 : 보물

○ 문화재명 :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(世宗 碑岩寺 極樂寶殿)

○ 지정내용

- 소재지 :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(다방리4)

- 구조/형식/형태 : 1고주 5량가/ 다포계(多包系)/ 단층 팔작지붕

- 수량 : 1동

- 조성연대 : 조선시대

- 재질 : 목재, 한식기와

- 소유자(관리자) : 대한불교조계종 비암사(대한불교조계종 비암사)

- 지정면적 : 182.2㎡

연번	소재지/ 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유자		관리자	
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
1	세종특별 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(다방 리4)	종	869	182.2	대한 불교 조계종비암 사	세종특별자 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(다방리4)	대한 불교 조계종비암 사	세종특별자 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(다방리4)
계			869	182.2				